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매입 시
국고 지원대상 확대 등〉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31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 설치	3
2.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매입 시 국고 지원대상 확대	9
3.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 설치	1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지혜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9.
3. 회부연월일 : 2024. 1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주둔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산업·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였음.

현행법은 이러한 낙후된 주한미군 주둔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반환받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한미군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된 정부부처가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총괄적인 조정 역할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무총리 산하에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두어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활용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여구역 내의 국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공용, 공공용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부지

매입경비 전부 또는 100분의 70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 신설, 제8조, 제13조의2 및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 설치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활용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및 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u>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u>확정</u> 하고, <u>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단 신설>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제13조의2에 따른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의 심의를-----확 정한다. <단서 삭제> 이 경우 필 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u>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u> 지체 없이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 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u>확정한</u> -----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u>제1항에 따 라</u>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 후 단에----- ----- ----- -----

현행	개정안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도시 및 지역개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운영·지원과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변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 설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종합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이라 함)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¹⁾으로,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행정기관위원회법」에서는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제한²⁾하고,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규정³⁾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유사 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재량으로 두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유사 입법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② ~ ⑥ (생략)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 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또한,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⁵⁾으로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르면 기존 행정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에 제한되는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등 총괄 조정 업무를 이미 수행중으로 해당 위원회 설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⑧ ~ ⑪ (생략)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23.5.16.개정, 2023.11.17.시행)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매입 시 국고 지원대상 확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를 하천·도로·공원 외에 지역발전을 위한 공용·공공용 시설로 조성하려는 경우에도 국가가 그 매입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고, 일부를 보조할 경우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보조기준⁶⁾의 하한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u>소요경비</u>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①----- ----- ----- ----- ----- ----- <u>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u> ----- <u>소요경비</u> 전부 또는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1. 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1. 2. (현행과 같음)
2.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6) 현재 도로·하천의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100분의 60 이상,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 100분의 60 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로 규정되어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② ~ ④ (생략)	3.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공용·공공용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가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가 토지 매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국가는 시행령에 따라 ① 도로·하천의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 이상, ② 공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원 조성시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 이상, 그 외의 경우 100분의 50 이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음.⁷⁾

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 및 지역주민 1인당 공원·도로·하천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과 주민 1인당 공원·도로·하

개정안은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매입 시 국비 지원 범위를 하천 또는 도로·공원 뿐만 아니라 공용·공공용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② 지원 비율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보다 상향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의 토지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함.

특히 반환공여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미군 주둔으로 인한 개발 제한으로 오랜 기간 낙후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 및 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공용·공공용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제24조⁹⁾) 비용 중당의 특례를 이미 마련하고

천 면적의 비율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8) 이소영·이제연,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방안」, 『정책이슈리포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 교통시설·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참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시설 조성 시에 공사비 등 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토지매입비까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지원의 중복이나 다른 국고보조사업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음.

둘째, 지원 비율 및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매입 소요경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 비율을 ‘소요경비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리 정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현행법은 국가는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는 재량에 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반면, 개정안은 매입 소요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국가는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경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건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 시설

보조를 하게 되는데,

보조금 부과를 의무로 규정하는 경우 보조금 편성에 관한 재량이 축소되고 탄력적 운영을 저해¹⁰⁾할 수 있다는 점,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¹⁾

이와 관련하여 기존 입법례는 지원 비율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원 여부는 재량으로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법인·단체 등의 운영이나 화재안전성능보강과 같이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그 소요 비용 등을 보조하도록 한 경우가 있음.

10)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p.470.

11) 참고로,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보조율 하한이 적용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추가 지원 대상인 지역을 예상하기 어렵고, 추가 지원 대상 사업·예산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비용 추계가 곤란함.

<예시 : 지원 비율 명시 및 지원 의무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¹²⁾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65조¹³⁾ 및 제66조¹⁴⁾에 따라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건축물관리법」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보조금) ① 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 1의2.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도의 위기대응 훈련에 드는 경비
2.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3. 제37조에 따른 시·도지사가 설치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 3의2. 제39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4.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5. 제46조에 따른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
6.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통 차단으로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

셋째, 법제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공공용시설에 해당하는 도로·공원에 대한 토지 매입비 지원에 대하여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제14조제1항제2호), 개정안은 별도의 조항으로 공용·공공용시설 전체에 대하여 규정(안 제14조제1항제3호)하고 있어 이는 도로·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용시설에 대하여 규정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법률에 보조율을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반환부지 내 모든 사업에 재정지원과 특정 보조율을 강제하게 되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의2.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치료비 또는 조제료

6의3.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7.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7의2. 제6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8. 제61조에 따른 검역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8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8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9.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시·도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시·도가 보조할 경비)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64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3.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 설치

개정안은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매수 경비 지원 등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2(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의 설치) ① <u>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u> ② 회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관리한다 ③ 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u>1. 반환공여구역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위탁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u> <u>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u> <u>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u> <u>4. 제6조의3에 따른 차입금</u> <u>5. 그 밖의 수입금</u> ④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u>1.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u>

현행	개정안
	2. 제3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제6조의3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3조제4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의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 5. 제2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자금 6. 제25조에 따른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에 필요한 자금 7. 제26조에 따른 교육·문화·관광시설의 설치·유치에 필요한 자금 8. 제27조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자금 9. 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10. 다른 회계로의 진출금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신설>	제6조의3(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의4(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신설>	제6조의5(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6조의6(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영하는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은 반환공여구역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위탁개발수입 및 동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타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차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동 회계의 세출로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에 필요한 경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의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 사회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자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세입(제6조의2③)	세출(제6조의2④)
1. 반환공여구역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위탁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6조의3에 따른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1.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제3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제6조의3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3조제4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의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 5. 제2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자금 6. 제25조에 따른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에 필요한 자금 7. 제26조에 따른 교육·문화·관광시설의 설치·유치에 필요한 자금 8. 제27조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자금 9. 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10.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산업·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반환공여구역 등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라 함)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의 감소 가능성이 있음.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는 반환공여구역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위탁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¹⁵⁾인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 등과 중복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감소를 초래하여 주한미군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공여해제반환재산”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을 말한다.

제9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①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한다.

③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위탁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④ (이하 생략)

다만,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2004년 제정 당시 2014년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되었고,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개정안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가 특별회계 신설의 심사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은 특별회계 신설의 요건으로 ① 새로운 특별회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②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을 규정함.

< 특별회계 신설 심사요건 >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예를 들어, 새로운 특별회계 설치가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더 효과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단일 소관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으며, 2025년 올해부터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¹⁶⁾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지원 관련 예산을 통합 관리하고 개별 사업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외에도 「국가재정법」 제4조¹⁷⁾에 따르면 국가가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함께 발의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32호)¹⁸⁾의 심사 경과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셋째, 「국가재정법」 제2조¹⁹⁾에 따르면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함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으로 규정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16) 참고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왔는데, 세부사업으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고, 2025년도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주변지역 지원사업’에만 약 618억원이 편성되었음.

17)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별표 1]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제4조제3항 관련)

18)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2호, 2024.12.19.발의, 2024.12.20.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19)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는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수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수입으로 이미 사용 중이며, 개정안의 특별회계와 주요 세입이 중복되어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50